

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 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소방서(이하 "소방서"라 한다)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방서의 명칭등) 소방서의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.

제3조(서장) ① 소방서장은 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.

② 소방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4조(하부조직등) 소방서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및 소방관파출소의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공무원) 소방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